

명예훼손 소송에서 사인인 원고가
언론사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판사는 배심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을 거부할 수 있다

Holtzscheiter v. Thomson Newspapers Inc.,
South Carolina 주대법원 1998. 9. 22. 선고

판시요지

신문 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Defamation)을 당한 원고가 신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을 받기 위하여는 원고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하여 피고가 현실적 악의를 갖고 행위 하였다는 점, 즉 피고가 당해 보도가 허위였음을 이미 깨닫고 있었거나 또는 그 보도의 진실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심각할 정도로 유보하였다고 하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이 없이 이루어진 배심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평결은 판사에 의하여 거부되어질 수 있다.

사건개요

1. 소송의 경과

원고(Holtzscheiter)는 피고 신문사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libel)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실심 배심원들은 명예훼손을 인정, 50 만 달러의 실손해배상과 150 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평결하였다. 그런데 사실심(trial court)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를 50 만 달러 감축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배심원 평결 번복을 구하는 피고의 신청은 기각하였다. 이러한 신청기각에 대하여 피고가 상소하여, 이 사건 법원은 다수의견에서 피고의 상소가 이유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보충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었다.

2. 사실관계

원고(피상소인)의 딸 'Shannon'양(17 세)의 피살 사체가 발견된 다음 날, 피고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이 "Shannon 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가족의 어떠한 지원도 없었다."고 Shannon 의 의사가 말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표현이 그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위 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은 기자에게 "Shannon 이 학업을 계속할 재정적 지원이 결여되었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문사가 이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많은 상황 증거가 발견되었다. 게다가 원고가 고등학교중퇴자인 자신의 딸에게 장차 일반적 교육 수준(G.E.D. :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까지 추구하고도록 격려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었다.

판결이유

<다수의견>

1. 보통법상의 명예훼손(Common Law Defamation)

보통법상의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전파시킨 경우 원고의 명예에 대한 손상으로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slander'는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의 형태인 반면, 'libel'은 서면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행동을 수반한 명예훼손의 형태이다. 따라서 텔레비전 방송이나 사진에 의한 것은 'libel'에 속한다. 어쨌든 이 사건의 신문보도는 'libel' 형태의 것이다.

메시지나 보도의 명예훼손이 표면상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또 하나 구별하여야 할 것은 'defamation per se'의 개념과 'defamation per quod'의 개념이다. 전자의 예로는 "A는 도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후자의 예로는 "A는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다. 즉 만일 보도를 접하는 자가 그 보도 자체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실이나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그 명예훼손적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도는 이른바 'defamation per quod'에 속한다. 이 경우 원고는 그 명예훼손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 보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외부의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위 예에서 A가 미혼이라고 하는 보도외적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비로소 A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피고회사의 보도는 위 양자의 구별에서 이른바 'defamation per quod'의 유형에 속하고, 따라서 그 명예훼손적 의미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외부의 증거가 필요하다.

한편 명예훼손의 법리에 있어서 'per se'라고 하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에 관하여 많은 혼란이 있는 듯하다. 그 하나는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해 보도가 이른바 'defamation per se'에 해당하는가 'defamation per quod'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당해 보도가 'actionable per se'(일견 제소 가능한가의 문제)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당해 보도가 'actionable per se'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주장과 입증의 문제로서 법률문제이고 배심원이 아닌 법원의 몫이다. 만일 당해 보도가 'actionable per se'라면, 보통법의 원리에 의해 피고는 보통법상의 악의를 갖고 행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일반적인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만일 당해 보도가 'actionable per se'가 아니라면, 보통법의 원리에 따라 원고는 보통법상의 현실적 악의와 특별 손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당해 보도가 'actionable per se'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법원이 평가함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에 관한 'slander'와 'libel'의 중요한 구별이 필요하다. 만일 사실심 법관이 당해 보도의 성격 때문에 당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성이 손상되어 졌다고 적법히 추정할 수 있다면, 그 'libel'은 이른바 'actionable per se'이다. 본질적으로는 모든 'libel'은 'actionable per se'이다. 이 사건에서 볼 때, 이 사건 보도는 'libel'의 형태이고 따라서 'actionable per se'이므로 특별손해에 대한 주장, 입증이 필요 없다. 한편 'libel'과는 달리 'slander'의 경우는 원고에게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이 구비되어야만 비로소 'actionable per se'라고 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섯 가지는 ① 도덕적으로 야비한 범죄를 행함, ② 몃쓸 질병에 걸림, ③ 간과, ④ 부정행위, ⑤ 해당 사업 내지 전문직업에서 부적합함을 보도함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보통법상의 원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는 일반 손해를 입었고, 피고회사는 보통법상의 현실적 악의를 갖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은 'liber' 형태의 사건이고 그렇다면 'actionable per se'이기 때문이다. 또한 더 나아가 이 사건 보도는 'defamation per quod'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는 그 보도의 명예훼손적 의미를 입증하기 위하여 외부의 다른 증거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2. 헌법적 쟁점

이 사건은 공적 관심사를 보도한 피고 언론사를 상대로 하여 일반 사인인 원고가 제기한 일반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헌법적 관련성 내지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보통법에 의하면, 명예훼손은 원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데, 헌법적 문제가 관련되면 이러한 보통법상의 규칙은 변경된다. 예를 들자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책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고의 과실을 문제 삼았으므로, 헌법에 의하여 원고가 자신의 '현실적 침해(actual injury)'를 입증하여야 하고, 원고는 'actionable per se'에서 유래하는 보통법상의 일반손해의 추정을 원용할 수는 없게 된다. 더 나아가 헌법상으로 원고는 또한 이 사건 보도가 허위라고 하는 보통법상의 추정도 원용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피고회사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하여 피고가 현실적 악의를 갖고 행하였다는 점, 즉 피고가 당해 보도가 허위였음을 이미 깨닫고 있었거나 또는 그 보도의 진실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심각하게 유보하였다고 하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제 이러한 점을 고려의 대상으로 하고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다.

3. 피고회사의 책임에 관한 Directed Verdict

피고회사는 이 사건 책임에 관한 배심원의 평결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거부하고 새로이 평결을 지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유 없다. 무릇 손해배상책임 소송에 있어서 당해 사건의 쟁점에 관하여 그 판단을 배심원단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정당화 사유가 있는 한 그 배심원단의 평결을 법원이 거부하고 새로운 평결을 하도록 배심원단에게 지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회사는 또한 이 사건 보도가 비록 명예훼손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되어진다고 하여도 그 내용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사실 또는 의견의 표현이거나 또는 공공 관심사에 대한 단순한 논평으로서 위 배심원단이 피고회사가 유책하다고 하는 평결을 함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하급심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사항을 상소심에서 비로소 주장한 것이라는 등의 절차상의 문제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회사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하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더 나아가 위 보도는 실질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피고회사는 원고가 자신의 명예에 관한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위 배심원단이 피고회사가 유책하다고 하는 평결을 함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도 법원은 위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회사는 이 사건 보도 중 "Shannon 이 가정적 지원이 결여되었다."고 한 부분이 원고인 그 어머니에 관련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배심원의 평결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집단의 개별 구성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원칙은 소규모 집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입증이 되어 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징벌적 손해배상

피고회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고회사가 신청한 배심원 평결 거부 신청을 원심 법원이 기각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무릇 배심원이 평결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법원이 그 채택을 거부하는 결정을 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 요건으로서는, 원고가 피고회사가 보도를 함에 있어서 헌법상의 현실적인 악의를 갖고 행위 하였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서 이를 입증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회사가 그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그 진실 여부에 관하여 심각할 정도로 조사를 유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회사가 신청한 위 배심원 평결 거부 신청은 인용되었어야 할 것이다.

피고회사는 또한 주장하기를, 이 사건 징벌적 손해배상액수는 너무 지나쳐서 배심원의 편견, 오만성을 드러낼 정도이기 때문에 그 구제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법원의 심리 절차가 다시 시행됨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바, 이는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실심 절차의 재시행을 위하여 사건을 하급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보충의견 : Toal, A. J.>

우리 주의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법은 일관성이나 예측성이 없어 법원, 변호사, 일반 대중, 미디어 산업 종사자들 모두에게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 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의미 연방대법원의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헌법적 쟁점에 관하여 충분한 이론적 검토가 부족하여 그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본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소는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고 한다(Restatement sec. 558) 즉 ①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명예훼손적 진술, ② 제 3 자에 대한 비특권적 전파, ③ 전파자의 과실 그리고 ④ 특별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는 그 진술 내용자체의 제소가능성 또는 그 전파에 의하여 야기된 특별 손해의 존재가 그것이다.

먼저 위 ①의 요소에 관하여 살펴보면, 명예훼손적 진술은 허위이어야 하는 바, 보통법에 의하면, 명예훼손적 진술은 허위임이 추정된다는 것인데, 한편 피고는 진실하다는 것을 항변사항으로 주장할 수 있다. 미 연방대법원판결(Philadelphia Newspapers, Inc. v. Hepps, 475 U.S. 767)에 의하면, "신문사가 공공관심사에 속하는 발언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사인인 원고는 그 문제되는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서 문제되는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의미를 갖는가 함의 판단은 법률문제로서 배심이 아닌 법원이 결정할 몫이다.

다음 위 ③의 요소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전파자의 과실의 정도는 원고가 공인인가 사인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달라진다 할 것인데, 유명한 New York Times Company v. Sullivan, 376 U.S. 254 사건에서 미 연방 대법원은 “공무원이 당해 보도가 현실적 악의, 즉 보도자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무모하게 무시하고 이를 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이 자신의 공적 행위에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그 허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Curlis Publishing Company v. Butts, 388 U.S. 130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적 인물(public figure)에도 이러한 법리를 확장하여 적용시켰다.

반면에 공인과는 달리 사인인 경우에는 미 연방대법원은 Gertz v. Welch, 418 U.S. 323 사건에서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개별주가 적절한 수준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손해에 관련된 과실의 정도에 관하여 보면 위 Gertz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판시하기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진실 여부에 관한 무모한 무시의 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원고에게 있어서는 그 손해액을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Dun & Bradstreet 472 U.S. 751 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Gertz 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현실적인 악의의 입증 없이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처럼 판시한 바 있다. 나는 위 두 가지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기준 중 Gertz 사건에서의 기준을 선택하기로 하는 바, 그 이유는 이것이 다른 판례에서의 태도와 일관성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사건에 관하여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보도는 공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인에 관한 것, 즉 개인에 대한 가정적 지원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허위성의 입증은 원고가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가 항변사항으로서 그 보도의 진실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의사가 기자에게 말한 것도 제 3 자에 대한 비특권적인 전파에 해당하지만, 기자가 이를 인쇄매체로서 공공에 전파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①, ②의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할 것이다.

다음 위 ③의 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사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과실의 정도는 다른 많은 주가 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과실만으로 족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나는 다수의견처럼 이 사건 배심원의 평결을 거부하고 다시 배심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 보도를 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악의가 있었다는, 즉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진실여부에 관한 조사의 무모한 무시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한 입증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의견 : Chandler, A.A.J, Moore, A.J〉

반대의견에서는 대부분의 다수의견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다음의 두 가지 점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첫째, 이 사건에서 배심원이 평결한 손해배상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편견, 오만을 나타낼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배심원의 판단이 다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이 사건의 문제 보도가 다수의견처럼 'defamatory Per quod'인 것이 아니고,'defamatory per se'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 배심원의 손해배상 판결 중 현실적 손해액에 관한 부분은 유지되고,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이를 파기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출처 : Media Law Reporter, Vol.26, No.48, pp.2537~ 2553.

역 : 오관석 판사 (대법원 도서관 조사 심의관)